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4. . .<br>(제 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박상우<br>(국토교통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만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형 주택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31. ~ 2. 29.) 및 재입법예고(2024.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제1호 중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제1호나목”을 “제1호나목(1)”으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 주택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도시·군계획조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도시·군계획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경우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② (생략)                                                                                                                                                           |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 ③ -----<br>-----<br>-----<br>-----<br>-----.                                                                                |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u>용적률</u> 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1. -----<br>-----<br>-----<br>-----<br>-----<br>-----<br>-----<br>----- <u>용도지역별</u><br><u>최대한도</u> -----<br>-----<br>----- |
| 2. ~ 6. (생략)                                                                                                                                                                          | 2. ~ 6. (현행과 같음)                                                                                                            |
| ④ ~ ⑫ (생략)                                                                                                                                                                            | ④ ~ ⑫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1 - 3709 |